

## 「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·폐업 지원사업」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)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7. 23.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### 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: sosanggong@gepa.kr
- 우편(등기):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,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

### 문의
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  
북부지소 ☎ 054-900-3806, 3837 (E-mail) sosanggong@gepa.kr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(고객의소리, 국민신문고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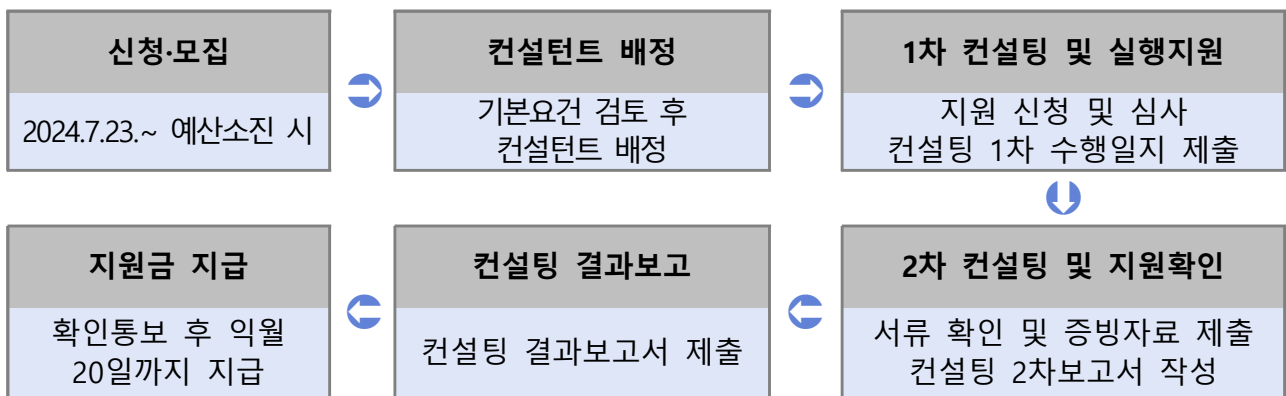
### 선정결과 통보

- 업체별 개별통보(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)

# 1. 사업개요

○ 사업명	: 2024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·폐업 지원사업
○ 선정방법	: 서면심사(자격심사)
○ 사업내용	: 공고문 내용 참조
○ 대상자별 지원금액	: 사업정리: 1건당(최대) 금 3,000,000원(금삼백만원) 재창업: 1건당(최대) 금 20,000,000원(금이천만원)
○ 신청방식	: 이메일 접수: sosanggong@gepa.kr 우편(등기):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,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
○ 지원규모	: (재창업) 1개사 (폐업지원) 1개사
○ 신청서접수일시	: 2024.7.23.(화)
○ 신청서접수마감일시	: 예산소진 시까지

# 2. 추진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3. 사업목적

-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에서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, 경영·심리적 안정 및 재기울 향상에 기여
- 철거·원상복구 대상 업체에 사업정리지원금을 지원하고,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폐업충격 완화

## 4. 주요 공지사항

### □ (지원내용)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

#### 1. 사업정리(폐업) 지원사업

-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,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+공급가액의 10% 자부담)

##### 1) 폐업한 '사업체'를 기준으로 지원

- ※ 1인이 영주시 내 복수 사업장 운영 후 폐업예정 경우 중복 지원 허용

##### 2) 단, 1개 사업체에는 '1인의 사업주'만 지원

- ※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(공동대표, 각자대표 등)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

#### 2. 재창업 지원사업

-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,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<sup>1)</sup>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,000만원 지원 (부가세+공급가액의 30% 자부담)

##### 1) 1개 사업체에 '1인의 사업주'만 지원

- ※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,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(공동대표, 각자대표 등)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

##### 2)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

- ※ 직계존비속,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

##### 3)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, 홍보, 설비 등

[표1]의 지원항목을 최대 2,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<sup>2)</sup>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
- ※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, 주관·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(이의제기 불가)

1)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

2) 임대료,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, 권리금,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

[표1 :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항목]

단위사업		지원내용	지원한도 (천원)
필수	컨설팅	-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, 시설환경 개선 자문,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- 회당 300,000원, 최대 2회* * 컨설턴트의 경우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모집 및 선정한 컨설턴트 POOL에서 활용	600
선택 (복수 선택 가능)	인테리어	-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· 옥외 간판교체: LED 간판, 판형 간판 등 · 인테리어 개선: 도배, 도색, 지붕, 차양막(어닝) 설치, 조명, 가벽 설치, 바닥, 전기조명공사 등 · 출입문, 화장실 개선	15,000
	홍보지원	- 전단지, 리플렛,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※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- 제품포장제(포장용기, BI, 포장디자인 개발 등)	6,000
	설비지원	- CCTV, 소독기, 살균기, 소화방법설비 구축 및 구매 -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- 발열화상 카메라, 칸막이 가림막	4,000

4)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

※ 지원불가 예: 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진열대, 테이블, 의자 등

## □ 지원 세부내용

### 1-1. 사업정리 지원금 지급

가. 소상공인 사업정리(폐업철거)비용 지원은 1건당 최대 300만원이며,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,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.

(자부담 공급가액의 10% + VAT)

나.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사업정리(폐업철거) 비용을 지급함.

다.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, 결과보고서 수정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분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사업정리(폐업철거) 비용을 지급함.

## 1-2. 사업정리 지원금 지급 지출증빙 세부사항

- 가. 세금계산서: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,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
- 나. 견적서(비교견적서 1부 포함): 구체적인 구매내역(품목, 수량, 단가 등)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거래처의 직인 필수
- 다. 계약서: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, 예약일, 계약금액,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
- 라.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: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이 동일해야 함.
- 마. 입금내역: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
  - \*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·외상거래 절대 불가

## 2-1. 재창업 지원금 지급

- 가. 소상공인 재창업 비용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2,000만원이며,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,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.  
(자부담: 공급가액의 30% + VAT)
- 나.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함.
- 다.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,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비용을 지급함.

## 2-2. 재창업 지원금 지급 지출증빙 세부사항

- 가. 세금계산서: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,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
- 나. 견적서(비교견적서 1부 포함): 구체적인 구매내역(품목, 수량, 단가 등)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거래처의 직인 필수
- 다. 계약서: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, 예약일, 계약금액,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
- 라. 제작/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: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이 동일해야 함.

마. 입금내역: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

\*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·외상거래 절대 불가

### 3. 지원금 지급 취소 주요 조건

가.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

나.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(제작)한 경우

다.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
라.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
마.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바.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\* 예시: 허위서류 제출,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3자 부당개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서류 위·변조 등

\*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(유형에 따라 형사고발),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

사. 신청업체가 부도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아.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# 4. 지원금 변경 및 포기

가. 신청서 제출 이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단위사업의 추가는 불가능

나. 사전보고서 제출시 초기 신청서상의 재창업 지원사업 선택사항 추가는 불가능하나, 초기 신청서상 기선택 단위사업 내 내용 변경은 가능

다.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

라.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

### 5. 지원금 지급 관련

가. 지출증빙은 은행(또는 ATM)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,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

나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, 이외의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

## 5. 신청자격

### ① 사업정리 지원사업

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1)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(기폐업자 불가) 사업자등록증 소지자
- 2) 개업년월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

### □ 참여자 배제사유

-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- ③ 최근 3년간 경상북도, 영주시, 중앙부처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
- ④ 폐업 후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
-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
-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- ⑦ 부동산 임대업, 비영리사업자·법인
-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(붙임2)
-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② 재창업 지원사업

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,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,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1)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
- 2)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
- 3) **2024년 11월 30일까지**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
- 4) 폐업신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

### □ (참여자 배제사유)

- ① (미신고폐업자)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
- ② 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전자상거래업)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
-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

-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- ⑤ 폐업(사업정리)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
- ⑥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자(10백만원 이상)
- ⑦ 부동산 임대업, 비영리사업자·법인
-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(붙임2)
- ⑨ 폐업 후,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
- ⑩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6. 신청방법

### □ 사업정리 지원사업

- (접수기간) 2024.7.23.(화) ~ 예산소진 시까지
- (접수방법)
  -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 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.
  -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[표2]와 같음.

[표2: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]

구분	서류명	작성방법
1	사업지원신청서	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3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
4	매출증빙서류	1.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2.1.~현재) 2. 면세사업자 -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2022.1.~현재) 3. 법인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상태표(2022.1.~현재)
5	상시근로자 확인서류	1.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 2.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-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(기간: 최근 12개월)
6	임대차계약서 사본	
7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원	

□ 재창업 지원사업

○ (접수기간) 2024.7.23.(화) ~ 예산소진 시까지

○ (접수방법)

1)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.

2)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[표3]와 같음.

[표3 :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제출서류]

구분	서류명	작성방법
1	사업지원신청서	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3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(폐업사업체)	폐업사실증명원으로갈음가능
4	매출증빙서류 (폐업사업체 1부)	1.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2.1.~폐업일)
		2.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2022.1.~폐업일)
		3.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상태표(2022.1.~폐업일)
5	상시근로자 확인서류 (폐업사업체 1부)	1.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
		2.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-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- 폐업업체 : 폐업일 이전 12개월분
6	폐업사실증명원(폐업사업체)	
7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원	

## 7. 선정절차

### ① 서류심사(적격심사)

-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, 사업계획서 심의(허위, 부실 등)  
가. 선정: 총 2건 내외(사업정리 1건, 재창업 1건)  
나. 내용: 신청조건 확인 적부심 후 지원여부 결정
  - 1) 각 사업별 주요사항, 신청요건, 신청제한요건을 검토하는 적부심
  - 2) 진흥원은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컨설팅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음.
- 다. 심사자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

### ② 컨설턴트 배정

- 진흥원은 수요발굴 해당 컨설턴트를 우선하여 사업자의 지역, 업종, 분야에 부합하는 컨설턴트를 매칭함.

### ③ 컨설팅 수행

-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이 컨설팅을 진행함.
  - 1) 컨설턴트는 사업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며, 1회당 5시간씩 2회 / 총 10시간 이상 컨설팅을 진행하여야 함.
  - 2) 컨설팅은 대면컨설팅, 폐업 관련 필수사항 안내, 자료수집, 사업계획서 수정, 기타 진흥원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등을 포함함.
  - 3) 컨설턴트는 지원사 매칭 후 7일 이내에 유선연락 등 사전조사 내용을 토대로 견적서<sup>3)</sup>를 포함한 사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.<sup>4)</sup>
  - 4) 진흥원 담당자는 컨설턴트로부터 제출된 사전보고서를 확인 후, 결격사항이 없을 시 지원결정 및 개시여부를 통보하며, 통보이후 사업 수행 가능
  - 5) 컨설턴트는 수행일마다 수행사진이 포함된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수행사진에는 반드시 컨설턴트가 포함되어야 함.
  - 6) 수행일지는 최소 2개 이상 결과보고 제출 시, 함께 제출하여야 함.

3) 해당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필수 제출

4) 1차 컨설팅 수행 후 신청자가 포기할 경우 및 사전진단·1차 컨설팅 수행 후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어 지원취소 결정된 경우에도 컨설팅 비용은 지급되나, 1차 컨설팅 수행 이전 사전보고서만 작성한 경우는 컨설팅비용 지급 불가

## 8. 지원금 지급

---

### □ 지원금 지급(사후 현장점검 이후)

- 지급일자: 현장실사 이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할 시 15일 이내 지급
- 지급계좌: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확인된 계좌로 계좌입금(통장사본)
  - 이체내역서(송금 영수증), 세금계산서 등을 경제진흥원으로 제출

## 9. 기타 유의사항

---

### □ (유의사항)

- 참여희망 소상공인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계획을 보류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,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
- 사업 참여 기업 선정시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[www.gepa.kr](http://www.gepa.kr))에 공고 예정

붙임 「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」 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 각 1부. 끝.